

「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7. 9. 6. 개정 판 (시행 2017. 10. 1.)

바뀜 2 · 신설 3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83/compare?from=201&to=79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0:3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24조 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학칙 제24조 제 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ICEC원장, 교양대학장, 학사지원팀장, 학과(부)장(3인), 교수(3인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-04-29> <개정 2016-02-29>	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국제교육원장, 교양대학장, 학사지원팀장, 학과(부)장(3인), 교수(3인), 위촉직 위원 (3인: 학생대표, 산업계 대표, 지역사회 인사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-04-29> <개정 2016-02-29><개정 2017-10-01>
<신 설>	제5조의2(교육과정 개선)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(폐지, 신설, 변경)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.<신설 2016-03-01>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(CDR)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<신 설>	제8조(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)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6-03-01>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.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, 교무부처장, 교목부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.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.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.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6-08-01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(기타 사항) <u>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국제교육원장, 교양대학장, 학사지원팀장, 학과(부)장(3인), 교수(3인), 위촉직 위원 (3인: 학생대표, 산업계 대표, 지역사회 인사)로 구성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교육과정 개선)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(폐지, 신설, 변경)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.

-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(CDR)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-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-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(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)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.
-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.
 -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, 교무부처장, 교목부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.
 -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.
 -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-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.
 -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